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61
----------	------

발의연월일 : 2021. 4. 28.

발 의 자 : 박대수 · 김선교 · 김성원
김승수 · 김영식 · 김용판
김형동 · 박성민 · 이종성
지성호 · 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 등에서는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여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5조 및 제66조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로 한다.

다만, 순환골재는 제외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반기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를 “협회에”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순환골재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신설>

<신설>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중간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반기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협회에 -----

<p>③·④ (생략)</p> <p>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14. ~ 17.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6조(과태료) ①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13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순환골재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p> <p>14. ~ 17.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